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규완 의원의 7인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0년 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10년 1월 18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하여
-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,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,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, 지역업체 공동·하도급 참여 등을 권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가.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 신설(안 제5조)
- 나.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다.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권장사항 신설(안 제7조)
- 라.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공동도급 비율 49%, 하도급 비율 50%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 신설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하여

-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,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,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, 지역업체 공동·하도급 참여 등을 권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제반절차도 이행하였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※ 인천, 경기, 충남, 전북 등 4개시도 : 개정 시행중